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 제 2 조 (평정요소)** 평정요소는 업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업적은 부서성과 및 개인성과이며 역량은 경력, 자질고과 및 직무외 성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 1)
- 제 3 조 (평정의 원칙)** 평정자는 평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평가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막연한 추측 및 전반적인 인상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1)
 3. 평가는 해당기간 중의 근무성적에 대하여서만 실시하고 해당기간 이외의 평가결과에 연관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1)
 4. 평가는 각 평가요소별로 독립평가가 되어야 하며 다른 평정요소의 결과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1)
 5. <삭제 2010. 1. 1>
- 제 4 조 (평정대상)** 평가는 부처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2. 12. 4)
- 제 5 조 (평가자)** ① 평가는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요소에 따라 1차 평가가 필요한 경우 1차 평가자는 평가일 당시 피평가자 근무처의 상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2차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10. 1. 1)
- ② 부분별, 직무별 평가자, 피평가자 집단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 ③ <삭제 2010. 1. 1>
- 제 6 조 (감점 및 가점)** 평정기간중의 상벌 또는 결근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점 또는 가점 평정한다.(개정 2016. 5. 4, 2017. 9. 1)
1. 포상
 - 가. 법인 이사장과 총장 표창
 - 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교외 표창
 - 다. 위 가, 나에 대한 가점은 별도로 정함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징계 등에 대하여 감점하며, 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3. <삭제 2017. 9. 1>
 4. <삭제 2017. 9. 1>
- 제 7 조 (평가기준)** 평가에 대하여는 부서별 및 개인별 평가 지표에 의하며 평가지표는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1. 1)
- 제 8 조 (평가기준일)** 매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동안의 근무업적과 역량을 평가한다. (개정 2010. 1. 1, 2016. 5. 4)
- 제 9 조 (평점)** 업적 및 능력, 태도의 평점을 위한 평가 요소별 가중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며 본인평가 및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차상급자가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0. 1. 1)
- 제 10 조 (평정표 제출)**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 제 10 조의 2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회와 평가대상자에게 당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2. 8.>

제10조의 3 (평가결과의 확정) 이의신청기간 이후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8.)

제10조의 4 (평가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승진,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2. 6.)

제11조 (평정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평정결과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평정업무의 관장) 직원의 평정에 관한 업무는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